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 거주 요건(5년) 및 보충연금 신설 등〉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8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내 거주 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7
다. 관계 기관 의견	12
2. 보충연금 신설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3
다. 관계 기관 의견	18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0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9.
- (3) 회 부 일 : 2025. 3. 20.

나.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금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렇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감소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료·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또한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주요내용

- 1)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 2) 보충연금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 3) 국외의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 4)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내 거주 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며(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u>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u>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가. <u>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u>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 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	<u>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u>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u>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가. <u>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3.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 6.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범죄경력----- <삭 제>

현행	개정안
<u>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u>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u> <u>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u>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u> <u>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 ⑥ (생략)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9.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u>10.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u> <u>11.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u>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에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¹⁾(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복수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6,710,799명) 가운데 복수국적자는 총 7,032명(0.1%)임.

□ 그런데,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여온 일반 노인과 그렇지 아니한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세수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음.

- 이외에도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외 소득이나 외국에 보유한 재산 등의 파악이 쉽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개별 복수국적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1)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을 신설함으로써 일반 노인과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을 제고하고,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판단에 개별 수급희망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스웨덴·아이슬란드(3년), 노르웨이(5년), 호주(10년) 등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국내 거주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며,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경우 그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복수국적자에게 국내 거주 기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3조제3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안 제11조제2항제5호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같은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2)에 따르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인 안 제11조제2항제2호(현행법 제11조제2항제1호나목³⁾)와 같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3)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 법제적 측면에서는, 안 제11조제2항제8호의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범죄경력 자료’를 정의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등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⁵⁾ 등을 참고하여 ‘범죄경력자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거주 요건(안 제3조제3항)과 국외 소득 및 재산의 신고 의무(안 제10조)가 어느 경우부터 적용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에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추가하고,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19세 이후 7년 이상 국내 거주’를 신설하려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602호)과 ‘19세 이후 10년 이상 국내 거주’를 신설하려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55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국내 거주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복수국적자 등과 국내 거주 국민 간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부과 및 자료·정보 제공 범위 확대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임.

□ (재외동포청) 신중검토

-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국내 체류 시의 소비나 국내 자본시장에의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경제에 기여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를 통한 기여만을 요구하는 일률적인 국내 거주 요건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세청) 수정수용

- 해외금융계좌정보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보충연금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충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보충연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충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충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하며, 그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2025년 현재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5년 현재 342,510원⁶⁾)을 상한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데,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여짐.⁷⁾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25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만2천5백1십원으로 한다.

- 「기초연금법」이 제정된 2014년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었고,⁸⁾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2018년 기준연금액과 2021년 기준연금액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이 되도록 일시에 인상하였는데,⁹⁾

7)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에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액

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9)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에 앞서 소득 하위 2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19년에 먼저 30만원으로 인상하고,¹⁰⁾ 이어 소득 하위 4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20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¹¹⁾

□ 그런데, 기초연금 급여의 산정기준이자 그 상한액인 기준연금액이 빈곤한 노인의 최저생계 보장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 내지 완화하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¹²⁾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충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초연금을 통하여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극빈층의 노후 빈곤을 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총 675,596명으로,¹³⁾ 이들이 개정안에 따른 보충연금 수급자가 될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10) 법률 제1624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11)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1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이 전액 포함되어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액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생계급여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전체 수급액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생계급여가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됨.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기초연금 급여는 ‘이전소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¹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바,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충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 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가 삭감되므로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기초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 판단에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급여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김선민의원(제4827호) 및 전진숙의원(제6519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4. 이전소득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 아울러 안 제8조의2제2항은 보충연금액을 기준연금액에 연동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충연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별 수급자가 지급받게 될 보충연금의 금액과 전체적인 예산 소요 등에 관한 예측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보충연금의 지원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인 사람에 대한 2026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우선 일시 인상한 다음 202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30% 초과 5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일시 인상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2호)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2026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일시 인상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9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보충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보충연금 신설 등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